

제146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검 토 안 전 》

-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의회 운영 위원회
전문위원 한신수

□ 안건명 :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공포)됨에 따라
-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으로 개정
-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개정
- 제9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개정

□ 검토보고

지방자치법이 2007. 5. 11일 법률 제8423호로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된바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남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 중 법규문서의 맞춤법(법규문서 등의 문장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말은 쓰지 아니한다. 다만 관행적으로 붙여 쓰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 의거 제명 등의 띄어쓰기와 개정된 모법에 의한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본 조례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건명 :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공포)됨에 따라
-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의2” 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 로 개정
-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으로 개정

□ 검토보고

지방자치법이 2007. 5. 11일 법률 제8423호로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된바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남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 중 법규문서의 맞춤법(법규문서 등의 문장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말은 쓰지 아니한다. 다만 관행적으로 붙여 쓰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 의거 띄어쓰기와 개정된 모법에 의한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본 조례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전명 :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공포)됨에 따라
-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8조·제39조·제41조” 를 “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제45조·제47조” 로 개정
- 제2조 중 “법 제41조”를 “법 제47조”로 개정
- 제3조 중 “법 제38조 및 제39조, 제41조” 를 “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 로 개정
- 제4조 중 “법 제38조”를 “법 제44조”로 개정
- 제6조제1항 중 “법 제125조”를 “법 제134조”로 개정
- 제6조제2항 중 “법 제36조 제1항” 을 “법 제41조제1항” 으로 “법 제118조” 를 “법 제127조”로 개정

□ 검토보고

지방자치법이 2007. 5. 11일 법률 제8423호로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된바 있으므로 개정하고자하는 본 조례는 개정된 모법에 의한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전명 :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공포)됨에 따라
-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를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로 개정
-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7조” 를 “「지방자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로 개정
- 제2조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 로 개정
- 제2조제4호 중 “법 제108조 내지 제111조” 를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 로 개정

□ 검토보고

지방자치법이 2007. 5. 11일 법률 제8423호로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된바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남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 중 법규문서의 맞춤법(법규문서 등의 문장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말은 쓰지 아니한다. 다만 관행적으로 붙여 쓰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 의거 제명의 띄어쓰기와 개정된 모법에 의한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본 조례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건명 : 성남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공포)됨에 따라
- 성남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 “성남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를 “성남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로 개정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로 개정
- 제5조 중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로 개정

□ 검토보고

지방자치법이 2007. 5. 11일 법률 제8423호로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된바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남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 중 법규문서의 맞춤법(법규문서 등의 문장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말은 쓰지 아니한다. 다만 관행적으로 붙여 쓰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 의거 띄어쓰기와 개정된 모법에 의한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본 조례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건명 :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공포)됨에 따라
-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로 개정

□ 검토보고

지방자치법이 2007. 5. 11일 법률 제8423호로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된바 있으므로 개정하고자하는 본 조례는 개정된 모법에 의한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전명 :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공포)됨에 따라
-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 동 조례 제26조(준용규정)중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를 명칭변경 개정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 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 로 개정
-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 로 “법 제108조 및 제111조” 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 로 개정
- 제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37조” 를 “법 제146조” 로 개정
-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 제95조제2항” 을 “법 제104조제2항” 으로 개정
- 제23조 중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으로 개정
- 제25조제7항 중 “지방자치법 제20조” 를 “법 제27조” 로 개정
- 제26조(준용규정) 중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으로 개정

□ 검토보고

지방자치법이 2007. 5. 11일 법률 제8423호로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된바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남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 중 법규문서의 맞춤법(법규문서 등의 문장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말은 쓰지 아니한다. 다만 관행적으로 붙여 쓰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 의거 띄어쓰기와 개정된 모법에 의한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본 조례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건명 :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 일부개정 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공포)됨에 따라
-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을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으로 개정
-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35조”로 개정

□ 검토보고

지방자치법이 2007. 5. 11일 법률 제8423호로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된바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남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 중 법규문서의 맞춤법(법규문서 등의 문장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말은 쓰지 아니한다. 다만 관행적으로 붙여 쓰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 의거 제명의 띄어쓰기와 개정된 모법에 의한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본 조례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건명 :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 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공포)됨에 따라
-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 동 규칙 제1조(목적)중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를 명칭변경 개정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관련 조항도 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을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으로 개정
- 제1조 중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 을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3제4항” 으로 개정
- 제2조제1항 중 “조례 제9조제2항” 을 “조례 제9조제3항” 으로 개정
- 제3조제1항 중 “조례 제7조제6항” 을 “조례 제7조의3제3항” 으로 개정
- 제5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제75조” 를 “「지방자치법」 제83조” 로 개정

□ 검토보고

지방자치법이 2007. 5. 11일 법률 제8423호로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된바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남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 중 법규문서의 맞춤법(법규문서 등의 문장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말은 쓰지 아니한다. 다만 관행적으로 붙여 쓰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 의거 제명의 띄어쓰기와 개정된 모법에 의한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본 조례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건명 :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공포)됨에 따라
-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을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개정
- 제1조 중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로 개정
- 제2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를 “「지방자치법」 제72조” 로 개정
- 제3조 제1항 중 “의회회의규칙” 을 “규칙” 으로 개정
- 제3조 제3항 중 “의회회의규칙” 을 “규칙” 으로 개정
- 제4조 제1항 중 “의회회의규칙” 을 “규칙” 으로 개정
- 제6조 제2항 중 “의회회의규칙” 을 “규칙” 으로 개정
- 제7조 제1항 중 “의회회의규칙” 을 “규칙” 으로,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 및 보존등에관한규정” 을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개정
- 제7조 제2항 중 “의회회의규칙” 을 “규칙” 으로,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 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을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개정
- 제9조 중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을 “규칙” 으로 개정
- 제10조 제2항 중 “의회회의규칙” 을 “규칙” 으로 개정
- 제11조 제1항 중 “의회회의규칙” 을 “규칙” 으로 개정
- 제12조 제2항 중 “의회회의규칙” 을 “규칙” 으로 개정

□ 검토보고

지방자치법이 2007. 5. 11일 법률 제8423호로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된바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남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 중 법규문서의 맞춤법(법규문서 등의 문장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말은 쓰지 아니한다. 다만 관행적으로 붙여 쓰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 의거 제명의 띄어쓰기와 개정된 모법에 의한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본 조례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